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35호 2020. 7. 1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6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170호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6
- 정선군 고시 제2020-17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1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860호 체납고지서 검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0-861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16

○ 정선군 공고 제2020-869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0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60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428-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대시설)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금회시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산 공공하수처리시설	A=34,600㎡	■ 다목적실 110.9㎡(지상1층) ■ 창고 110.7㎡(지하1층)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남면사무소)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
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면 무릉리	428-8	잡	788	788		정선군	-	-	-
2	"	430-2	잡	3,980	3,980		정선군	-	-	-
3	"	821-3	잡	288	221		정선군	-	-	-
4	"	430-13	답	3,839	3,671		정선군	-	-	-
5	"	430-15	잡	4	4		정선군	-	-	-
6	"	428-11	잡	12	11		정선군	-	-	-
7	"	821-4	잡	27	26		정선군	-	-	-
8	"	428-2	잡	89	89		정선군	-	-	-
9	"	428-6	잡	82	82		정선군	-	-	-
10	"	426	잡	1,494	1,494		정선군	-	-	-
11	"	428	잡	3,219	3,219		정선군	-	-	-
12	"	428-10	잡	17	16		정선군	-	-	-
13	"	424-1	전	4	4		정선군	-	-	-
14	"	786-1	답	98	94		정선군	-	-	-
15	"	784-53	전	185	171		강원도	-	-	-
16	"	785-1	잡	253	222		강원도	-	-	-
17	"	425	잡	8,395	8,395		정선군	-	-	-
18	"	산589-4	잡	113	113		강원도	-	-	-
19	"	784-9	전	611	611		정선군	-	-	-
20	"	784-13	대	654	654		정선군	-	-	-
21	"	784-48	전	22	22		정선군	-	-	-
22	"	784-4	전	3,960	1,901		정선군	-	-	-
23	"	784-8	전	96	96		정선군	-	-	-
24	"	784-7	전	1,646	1,531		정선군	-	-	-
25	"	784-47	전	3,086	2,253		정선군	-	-	-
26	"	784-15	답	3,137	1,725		정선군	-	-	-
27	"	784-2	대	441	441		정선군	-	-	-
28	"	784-1	전	361	361		정선군	-	-	-
29	"	819-60	천	799	40		국(건설부)	-	-	-
30	"	784-26	도	3,546	1,127		강원도	-	-	-
31	"	784-16	대	106	106		정선군	-	-	-
32	"	784-3	전	983	983		정선군	-	-	-
33	"	784-49	전	149	149		정선군	-	-	-
계		33필지		42,484	34,600					

정선군 고시 제2020-170호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2020-260호]로 고시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정 선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 일원
- 면 적 : 당초) 1,858㎡, 변경) 1,872㎡
- 사업내용 :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 건립
- 사 업 비 : 68,479백만원 (금회 12,945백만원)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목 적 : 과거 고한읍사무소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징성 있게 재건축하여 지역사회의 공헌의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 2022. 12. 31.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대 표 자 : 대표이사 문태곤
- 시행 방식 :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세부사항 게재 생략)

5. 토지이용계획 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858	100.0	-
업무시설용지	1,858	100.0	단일건축물

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계재생략

7.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5,573	1,872			
고한읍 고한리	107-1	도로	3,620	72	-	국(국토교통부)	
고한읍 고한리	124-7	대	50	36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	대	1,815	1,744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주식회사강원랜드	
고한읍 고한리	125-14	대	88	20	-	정선군	

8. 의제 협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별첨1>

9.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정선군 경제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 : 계재생략(지역개발사업계획,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등)는 강원도 총괄기획과(☎033-249-3032) 및 정선군 경제과(☎033-560-2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한2-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지역	합계		62,250	-	62,25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6,587	-	26,587	4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40	-	17,040	27.4	
		준주거지역	9,547	-	9,547	15.3	
	상업 지역	소계	35,663	-	35,663	57.3	
		일반상업지역	35,663	-	35,663	57.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⑦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62,250	-	62,250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변경)

가. 도로

(가)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0	5,543 (1,163)	3	2,894 (359)	4	2,364 (741)	3	288 (63)
대로	1	71 (46)	-	-	-	-	1	74 (46)
중로	1	1,953 (648)	-	-	1	1,953 (648)	-	-
소로	8	3,519 (469)	3	2,894 (359)	3	411 (93)	2	214 (17)

(나)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71 (46)	구역계 고한리 124-4철	중로 2-7 고한리 124-9대	일반 도로	고한남부 장로교회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48)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294호 (73.7.12)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576 (70)	중로 2-7 고한리 274-6대	소로 1-18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1,565 (40)	중로 3-8 고한리 산260-7임	중로 2-7 고한리 120-88대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753 (249)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임	소로 1-18 고한리 140-6대	일반 도로	고한 남부교회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2010-96호 (2010.07.09.)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321 (93)	중로 3-8 고한리 91-70도	중로 2-7 고한리 104-123대	일반 도로	고한순복 음교회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1-13 고한리 산297-57임	중로 2-7 고한리 274-276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2 (17)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고한주거지역계 고한리 274천	일반도 로		정선고29호 (02.5.1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274-196대	일반 도로	-	정고제25호 (2016.4.19.)	
변경	소로	3	35	4-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274-196대	일반 도로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3-35	소로 3-35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6m → 4m~6m - L=152m(변경없음)	◦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폭원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기정	C1	9,205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9,205	
기정	C2	5,558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58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확 지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기정	C3	600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600	
기정	C4	4,820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820	도로폭원 변경에 의한 블록면적 변경(소로3-35)
변경	C4	4,820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930	
기정	C5	3,740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740	
기정	C6	16,61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618	
기정	C7	2,956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956	
기정	C8	2,037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03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승인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400%~450% 허용: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C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400%~450% 허용: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450% 허용: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4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400%~450% 허용: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 폐 율	◦ 80%	
			용 적 륜	◦ 기준: 400% 허용: 50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4-5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 폐 율	◦ 60%	
			용 적 륜	◦ 기준: 200% 허용: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 폐 율	◦ 70%	
			용 적 륜	◦ 기준: 300% 허용: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4-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 폐 율	◦ 70%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적 륜	◦ 기준: 300% 허용: 350%	
			높 이	◦ 7층(24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1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기정	C2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4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5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6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정선군 고시 제2020-17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637,000천원

- 국고 (1,774,000), 지방비(661,000), 자부담(202,000)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
- 기반시설정비
 - 배수로정비(236m), 안전확보(보안등 23개소, 가로등 13개소, 소화전 4개소), 문화복지공간 조성(복지회관 225㎡),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104㎡), 커뮤니티센터 조성(근현대역사마을 일부 리모델링 99㎡)
- 주택정비
 - 빈집정비 12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34호, 집수리 74호.

○ 마을환경개선

- 안길정비(안길포장 99m, 난간조성 1개소, 분리수거장 3개소), 샘터정비(2개소),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6개소), 노후담장 정비(45m)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휴먼케어 1식, 주민역량강화 1식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860호

채납고지서 겸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가 채납되어 공유재산 대부자에게 채납고지서 겸 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정 선 군 수

1. 공고내용 : 채납고지서 겸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7. 10. ~ 2020. 7. 24.(15일)
3. 공고대상 : 불임참조
4. 게시장소 : 정선군청 홈페이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정선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강원도 정선군 회계과 재산관리팀(☎033-560-2323)

정선군 공고 제2020-861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명 칭	위 치	공사개요	사업시행기간
월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94-1번지 일원	호 안 : L=1.23km (좌안 950m, 우안 280m), 구조물공 : L=950m, (A=8,002㎡), 우안 L=280m (전석 쌓기 A=1,619㎡) 교 량 : L=136m, B=7.0m 콘크리트포장 : 774㎡, 부체도로 5개소, 기타 부대공 1식	'19. 12.20 ~ '22.02.01.

2. 시 행 자 : 정선군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열람기간 : 2020. 07. 13. ~ 2020. 07. 27.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6)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실시설계 도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등의 세목 조서

가.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관입면적 (㎡)	소유 구분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주소	성명	
합계						2필지	8,045				
1	정선군	임계면	용곡리	308-28	답	38	38	사	강원도 강릉시 산척길 77-7(신석동)	박*국	
2	정선군	임계면	용곡리	139-12	전	8,007	8,007	사	충청북도 청주시 예성로 360, 117동 207호 (연수동, 주공아파트)	변*근	

나. 물건조서 : 해당없음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붙임]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① 제목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대상 (토지, 물건)	대상 (토지, 물건)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번지
	의 건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869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탁·예수 형식으로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 제3조)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일반회계 진출 활용)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4조)

재원	용도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5조)

재원	용도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항목을 선택 적립 4. 기타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모든 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8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회계공무원 (안 제9조)

-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팀장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실 (우)26130

❖ 연락처 : 전화 560-2229 / 팩스 560-259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②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9조를 제9조부터 제10조로 개정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를 제6조부터 제8조로 개정하고, 제5조를 신설한다.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를 제7조부터 제9조로 개정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정선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⑦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⑧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주요 규정 사항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0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 정선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 및 대중교통장려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확대 (안 제4조)
 - 현행 10만원 ⇒ 개정 30만원 (20만원 인상)
- 인센티브 인상 분 소급 적용 (부칙)
 - 2019.12.02. 조례 시행일 이후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 소급 적용

3. 예고기간 : 2020. 7. 13 ~ 8. 2 (20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정선군 조례 제2753호의 시행일(2019.12.02.)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 도로교통법 · 제93조제1항제 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10만원</u>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 ----- ----- ----- ----- <u>30만원</u> ----- -----.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 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